#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현황과 전망

소 성 호
한국전력공사 발전처 지역지원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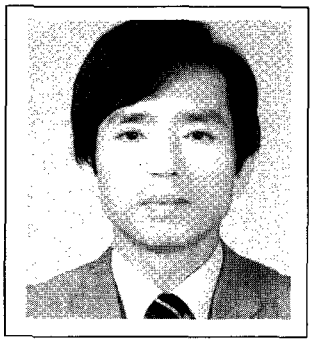

80년대 말부터 우리 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민주화의 과정을 겪었다.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 따라 발전소와 환경을 같이 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발전소 민원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보상요구, 권리주장 및 극심한 지역이기주의의 표출은 국가 산업의 근본인 전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른바 발전소 건설반대는 물론, 발전소 기능을 일부 정지시키는 등의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또한 도미노 이론처럼 전국의 발전소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의 적기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소와 이웃한 지역주민과의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살기좋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 및 전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법적보상이 아닌 순수한 의미에서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법제화 추진경위

한국전력공사는 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88년 4월 법제화추진반을 구성하고, 일본·대만 및 각국의 법령 및 사례검토, 발전소 주변지역의 현황파악, 주민의식조사 실시 및 공청회 개최 등 약 1년여의 작업을 거쳤다.

그후 89년 6월 임시국회에서 민자당 박우병 의원 외 12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표 1〉.

제정된 지원법은 일본·대만의 제도를 토대로 제정된 것은 사실이나, 기금설치·사업시행자·대상지역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실정 및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지원법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이후 1번의 법률개정 및 2번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그간의 미비점 보완 및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이룩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역발전 및 전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다.

한편 지원법을 원용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지원법」 및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법」이 제

〈표 1〉 지원법령 제정과정

| | |
|---|---|
| 88. 4. 11 | 법제화추진반 구성 |
| 89. 6. 16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4134호) |
| 90. 3. 8 | 동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2950호) |
| 90. 4. 23 | 동법 시행규칙 제정 (통상산업부령 제10호) |
| 92. 10. 19 | 동법 시행령 1차 개정 (대통령령 제13741호) |
| 95. 1. 5 | 동법 1차 개정(법률 제4901호) |
| 95. 7. 6 | 동법 시행령 2차 개정 (대통령령 제14715호) |
| 95. 7. 22 | 동법 시행규칙 1차 개정 (통상산업부령 제16호) |

정되었으며, 기타 부처 및 기관에서도 지원법을 연구하는 중에 있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국내 지원법 체계구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5년간의 지원실적(90~94)

한국전력공사는 90년부터 94년까지 약 800억원의 지원금으로,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 · 육영사업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을 적극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성 숙원사업 해소,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기반 조성 등으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및 신규 발전소 건설입지 확보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표 2〉.

소득증대사업으로서는 콤바인 · 건조기 등 최신 영농기계 공급, 저온저장창고 · 농기구수리센터 등을, 공공시설사업으로서는 다목적 복지회관, 도서관 · 공중목욕탕 · 주민건강진단 등을, 육영사업으로서는 장학금 ·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 1. 육영사업 실적

육영사업으로는 약 34,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고리원자력 등 15개 발전소주변지역에서는 장학기금을 설치 · 운영중에 있으며, 각급 학교에 컴퓨터 등 최신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학습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표 3〉.

### 2. 지역주민 우선고용

신입사원 채용시 지역주민 자녀에게는 10 % 가점혜택을 주고, 또한 발

〈표 2〉 5년간의 지원사업실적(90~94)

(단위 : 억원)

| 구 분 | 90 | 91 | 92 | 93 | 94 | 계 |
|---|---|---|---|---|---|---|
| 소득증대사업 | 14 | 30 | 33 | 52 | 77 | 206 |
| 공공시설사업 | 78 | 63 | 73 | 78 | 105 | 397 |
| 육영사업 | 15 | 17 | 23 | 41 | 54 | 150 |
| 홍보사업 등 | 6 | 7 | 7 | 10 | 11 | 41 |
| 합 계 | 113 | 117 | 136 | 181 | 247 | 794 |
| 대상발전소(기) | 54 | 59 | 60 | 62 | 65 | |

주) 95년에는 421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표 3〉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 명)

| 구 분 | 90~93 | 94 | 95 계획 | 합 계 |
|---|---|---|---|---|
| 국민학교 | 1,362 | 1,187 | 1,243 | 3,792 |
| 중학교 | 6,741 | 3,374 | 3,701 | 13,816 |
| 고등학교 | 8,284 | 3,507 | 3,762 | 15,553 |
| 대학교 | 246 | 111 | 178 | 535 |
| 계 | 16,633 | 8,179 | 8,884 | 33,696 |

주) 지급대상자 : 성적우수자 · 이주자 자녀 · 소년소녀가장 · 결식아동 등

〈표 4〉 지역주민 우선고용 현황

(단위 : 명)

| 신입사원 채용(가점혜택) | 발전설비 운전원 현지채용 | 계 |
|---|---|---|
| 284 | 104 | 388 |

주) 발전설비 운전원 현지채용은 94년부터 시행

전설비 운전원을 현지채용함으로써 장학금 지급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와의 일체 강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표 4〉.

### 3. 기타 지원실적

한국전력공사는 이밖에도 영월의 단종문화제 등 각종 문화제 지원, 지역주민 무료 이동진료사업, 가뭄시 양수기 지원 등의 각종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기반구축에 힘쓰고 있다.

## 지원제도의 획기적 개선

그간의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사회의 발전과 전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사업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사업을 둘러싼 지역주민 ·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변화, 지방화 시대의 진전 등 제반 환경여건의 변화로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지원사업의 시행, 지역발전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및 사업시행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등 지원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1월 및 7월에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표 5〉.

### 1. 지역주민의 창의력 및 자발적 참여유도

이번에 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체적인 특징은,

△ 마을별 지역이기주의에서 초래되는 지원금의 안분으로 인한 지원효과 감소를 배제하고자 지역발전 청사진을 담은 장기계획에 의거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기업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제도를 신설하여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에 더 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였고

△ 특히 특별지원금제도를 신설, 중앙위원회 및 한국전력공사의

〈표 5〉 지원법령 개정 주요내용

| 항 목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1. 총지원금 규모 | 전기판매수입금의 0.5% 이내 | 전기판매수입금의 0.8% 이내 | 96년 : 약 700억 |
| 2. 사업내용 | | | |
| ○ 소득 · 공공 · 육영사업 | 주민소득증대 등 | 현행과 같음 | |
| ○ 전기요금보조 | 〈신 설〉 | 원전주변지역의 주택용 ·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 | 고리 · 영광 · 월성 · 울진 |
| ○ 주민복지지원 | 〈신 설〉 | 주민소득증대 등에 저리융자 | 1인당 500만원, 연리 3% |
| ○ 기업유치지원 | 〈신 설〉 | 주변지역 입주기업에 저리융자 | 기업당 2,000만원, 연리 3% |
| ○ 특별지원사업 | 〈신 설〉 | 발전소 건설촉진을 위한 특별사업 시행 | 신규건설지역의 경우 건설비 1% 이내 |
|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지원 | 〈신 설〉 | 원자력 및 지원사업에 대한 대국민홍보 | 총지원금의 8% 이내 |
| ○ 주변지역교사 지원 | 〈신 설〉 | 우수교사 유치로 지역인재 육성 및 전력사업 홍보 | |
| 3. 발전소별 기본사업 지원금 | | | |
| ○ 원자력 | – | 50% 증액 | 신규원전 300만kW 경우 : 약 45억원 |
| ○ 석탄화력 | – | 30% 증액 | 신규유연탄 140만kW 경우 : 약 24억원 |
| 4. 계획수립 | 연간계획 |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 | |
| 5. 지방자치단체법 지원금 배분 | 면적비율 | 면적 · 인구 · 소재지 등 고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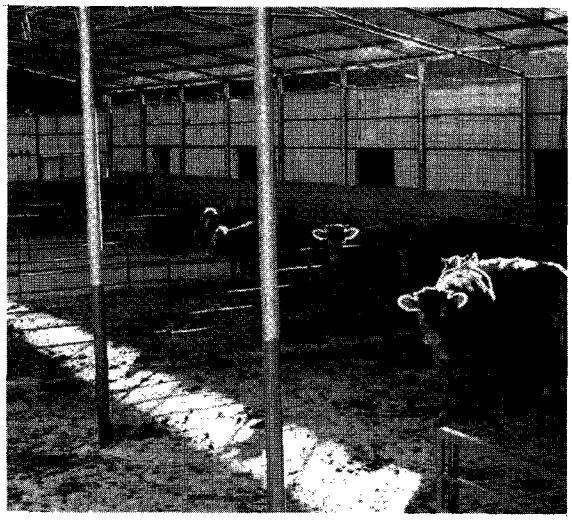

한우공동사육(월성원자력 : 경북 경주군 양북면)

축구부 지원(고리원자력 : 경남 울산군 서생국민학교

재량을 강화하여 지원사업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2. 총지원금 규모 확대

총지원금 규모를 현행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입금의 0.5%에서 0.8% 이내로 증액함으로써 현행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96년에는 약 7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 3. 전기요금 보조사업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원전주변지역주민의 전기요금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체 유치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날로 그 어려움과 함께 중요성이 증대되는 원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지역은 고리 · 영광 · 월성 · 울진원자력이며, 주택용의 경우 월 호당 100kWh 해당액 수준, 산업용의 경우 월 계약전력 kW당 1,600원 수준을 지원하게 되며, 연 2회에 나누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4. 주민복지 · 기업유치 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등에 저리융자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기업의 시설 ·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제도의 원금은 계속 적립되므로 지역발전 자생력을 증대시키는 모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표 6).

### 5. 특별지원사업 시행

발전소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과의 협상에 의거,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규발전소 건설입지를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특별지원금은 주변지역 및 시 · 군 지역이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별지원사업의 사업선정 및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가 결정하도록 함

농산물 저온저장고(무주양수발전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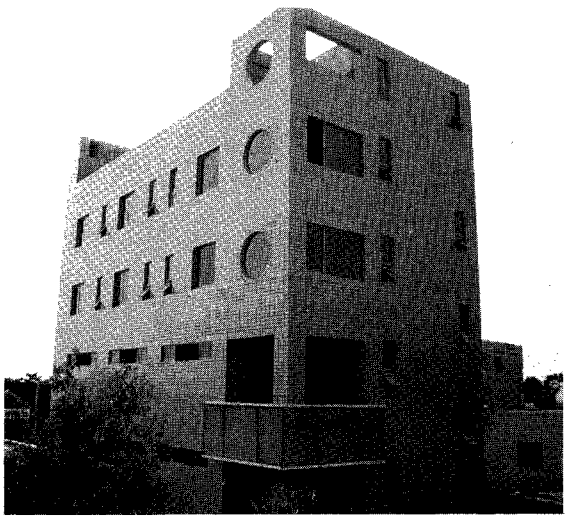

복지회관(월성원자력 : 경북 경주군 양남면)

〈표 6〉 주민복지, 기업유치지원금의 대출한도액 등

| 구 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환기간 | 비 고 |
|---|---|---|---|---|
|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원금 | 1인당 500만원 이내 | 연 3%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읍·면지역소재 발전소주변지역 |
| 기업유치지원사업지원금 | 기업당 2,000만원 이내 | 〃 | 〃 | 〃 (100만kW 이상 발전소) |

으로써 신규 발전소 건설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6. 장기 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 청사진을 담은 장기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주변지역을 종합적이고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장기지원사업계획 수립대상지역은 기본사업지원금이 10억원 이상인 지역으로 하였고,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 향후 지원사업 전망

지난 90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5년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역사회 발전 및 전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제 어느 정도 사업시행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금번 전기요금보조, 주민 및 기업에 대한 융자, 특별지원금 신설 등 지원법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지원사업은 이제 제2의 도약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향후 지원사업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시행·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옛말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주민,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합심·노력할 때, 지원사업의 성과는 극대화되고, 발전소와 더불어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한다.